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방안

•	연구 배경4
-	품질관리 시설 및 기술인 배치기준 현황 및 문제점6
-	건설기업 설문조사 결과 ······11
-	해외 주요국 사례17
-	제도 개선 방향23

연구 배경

1986 년 독립기념관 화재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을 제정하고, 발주자와 시공자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 의무를 규정하였음.

이후 개정을 거쳐 건설사업자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 의무와 대상 공사범위, 그리고 품질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품질관리 시설 및 관리자 배치기준이 규정됨.

- 배치기준은 총공사비 규모 및 연면적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로 구분됨.

2006 년 정부는 건설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험실 규모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완화하였으나¹⁾, 품질관리자 업무 전문성 취약 등을 이유로 2012 년 다시 배치기준을 상항한 바 있음.²⁾

- 2006 년 시험실 규모를 1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3 인 이상에서 2 인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나, 2012 년 특급·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배치기준을 3 인 이상으로 상향함.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발주자 승인시 인접한 유사 공종 현장의 통합 품질시험 및 검사를 허용하며, 품질시험 및 관리 업무의 외부 대행의 정도에 따라 시험실 규모와 품질관리 배치 인력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승인 사례는 매우 드문실정임.

-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3)
- 또한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공사 종류, 규모, 현지 실정과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자의 품질시험·검사대행 정도를 고려한 시험실 규모 및 품질관리 배치 인력 조정이 가능함.4)
- 다만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상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공사·공무와 독립(겸임금지, 조치요구권 부여 등)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의 통합관리 대상에 품질관리 기술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음.6)

품질관리자와 마찬가지로 건설현장 배치 필수 인력인 안전관리자의 경우 착공 및 준 공 시점의 특정 기간에 한해 배치 완화를 허용하고 있으나, 품질관리자는 전체 공사기간에 걸쳐 일정 규모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음.

- 품질관리비에 필요한 비용은 발주자가 산출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소요비용 과 비교해 과소 계상되는 경우가 많아 건설기업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또한 품질관리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 규모를 정함에 있어 품질관리 업무에 영향을